공 개

의안번호	제 288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7. 1. (제 12 차)

의결사항

『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』 변경 인가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7. 1.

1. 의결주문

□ 「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」(이하 ‘상호협정’) 변경인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□ ’26.6.16.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상호협정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며, 심사 결과 인가 요건에 부합하므로 상호협정을 변경인가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□ 공동인수 대상에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선박보험과 적하보험 추가 (안 제1조제5호)

4. 심사 결과

□ 손해보험협회의 상호협정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보험업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한 요건*을 심사한 결과, 모두 충족함

* 1.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
2.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

○ (경쟁 저해여부)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회신 (제조카르텔조사과-618, ‘26.6.18.)

○ (계약자 이익 침해여부) 보험계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(붙임)

나. 관계부서 협의

○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완료(’26.6.18.)
○ 2026년도 제1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2026.6.25.) 심의필

<별 지>

손해보험협회의「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.

— 다 음 —

1) 상호협정 명칭	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
2) 변경인가일	’26. 7. 1.

(붙임)

관련 법령

□ 보험업법

제125조(상호협정의 인가) ①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(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.

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정의 체결·변경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·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보험업법 시행령

제69조(상호협정의 인가)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·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
 가. 상호협정 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나. 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
 다.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
 라. 상호협정을 하려는 사유
 마. 상호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점포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
 바. 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영업 종류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개요 및 현황
2. 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
 가.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재사항
 나. 변경될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
 다. 상호협정을 변경하려는 사유 및 변경 내용
3. 상호협정을 폐지하는 경우
 가. 폐지할 상호협정의 명칭
 나. 상호협정 폐지의 효력 발생시기
 다. 상호협정을 폐지하려는 사유
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
2.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

③ 법 제125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보험회사의 상호 변경, 보험회사 간의 합병, 보험회사의 신설 등으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사항
2. 조문체제의 변경, 자구수정 등 상호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

□ 보험업법 시행규칙

제32조(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) 영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1. 상호협정서
2. 상호협정서 변경 대비표(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3. 그 밖에 상호협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보험과	보험감독국
연 락 처	02-2100-2961	02-3145-7474